

## 용인시 자체감사 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15호  
개정 1998. 10. 17 규칙 제141호(직제규칙)  
1999. 2. 26 규칙 제169호  
2005. 10. 5 규칙 제4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자체감사 실시대상, 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시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감사요원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 2. 26>

③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제5조(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전파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시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개정 1999. 2. 26>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세 및 세외수입과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15. 시 분청, 구, 읍·면·동, 사업소 또는 각 국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출연·출자기관의 지도감독 상황 <개정 2005. 10. 5>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 감사지시사항 및 처분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개정 1999. 2. 26>
  19. 기타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참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시본청 담당관, 실·과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5>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될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시장은 다음 연도의 시종합감사계획을 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부분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부분감사는 2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성명
4. 시정·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용인시 자체감사 규칙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 실시 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구, 읍·면·동 및 사업소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0.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0. 5 규칙 제416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